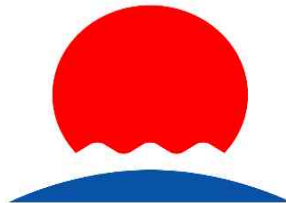




2015. 12. 07(월) 11:00
재난안전상황실(시청1층)

실무협의체 회의자료



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

목 차

I . 회의개요	1
II . 심의사항 (별도자료)	
1. 긴급지원사업 사후 조사결과 심의-추가연장	1
2. 긴급지원사업 사후 조사결과 심의-적정성	3
3. 4분기 자활기금 용자금 용자대상 심의	1 1
4. 자활기금 용자금 이행연기특약체결 승인	1 3
5. 부양의무자 관계단절에 따른 보호적정성 심의	1 4
III . 논의사항	
1. 실무협의체 연임관련 논의	2
2. 실무협의체 임원선출	3
3. 2015년 사업보고 및 2016년 사업계획 운영 논의	4
IV . 기타사항	

회 의 개 요

- 일 시 : 2015. 12. 07(월) 11:00
- 장 소 : 재난안전상황실 (시청 1층)
- 참석대상 : 18명
- 주요내용
 - 심의사항 (5건)
 - 실무협의체 위원 연임관련
 -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
 - 2015년 사업보고 및 2016년 사업계획(안) 승인

○ 진행순서

시 간		소요 시간 (120분)	내 용	비 고
부터	까지			
11:00	11:05	5	개 회	사 회 자
11:05	11:10	5	인 사 말 씀	실무협의체 위원장
11:10	11:25	15	심 의 사 항	각 부 서
11:25	11:35	10	실 무 협 의 체 연 임 관 련	실무협의체 위원장
11:35	11:45	10	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	실무협의체 위원장
11:45	12:00	15	2015년 사업보고 및 2016년 사업 계획 운영 논의	실무협의체 위원장
12:00	13:00	60	중 식	참 석 자 전 체
13:00			폐 회	사 회 자

실무협의체 위원 연임 관련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해시 협의체 운영조례, 운영지침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고자 함.

□ 개 요

- 구성근거
 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
 - 동해시 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의 제4항, 제6조
- 現 실무협의체 위원 임기 : 2013. 09. 01 ~ 2015. 08. 31
- 차기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 내용
 - 임 기 : 2015. 09. 01 ~ 2017. 08. 31
 - ※ 보건복지부 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- 실무협의체 연임대상자 : 18명(당연직 3명, 연임가능 15명)

구분	소 속	직 위	성 함	비 고
민간 부문 위원	동해종합사회복지관	사업팀장	서순영	연 임
	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	사무국장	배인주	"
	동해요양원	사무국장	강우철	"
	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	팀 장	김민정	"
	동해어린이집연합회	회 장	김순녀	"
	동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	사무국장	김영수	"
	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	팀 장	김영자	"
	동해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	사무총장	김종규	"
	동해시자원봉사센터	사무국장	김창래	"
	동해시니어클럽	실 장	박주연	"
	동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	팀 장	신영선	"
	동해 Y W C A	사무총장	우미강	"
	동해시장애인요양원	부 장	이정희	"
	동해지역자활센터	실 장	이영섭	"
	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	사무국장	차용식	"
공공 부문 위원	가 족 과	가족담당	정순기	"
	복 지 과	복지담당	박현진	"
	보 건 소	보건담당	김진문	"
총 18 명				

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

2015. 09. 01일 출범한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근 거

-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의4
 -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4항
 -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□ 임 기 : 2년 [2015. 9. 1 ~ 2017. 8. 31]

□ 역할 및 의무

- 실무협의체 위원장
 -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-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부위원장
 -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.
 -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□ 선출방법 :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

2015년 사업 실적 보고

1. 회의운영

① 대표협의체

- 대표협의체위원 : 20명
- 회의개최 : 1회(12/17일 2회 대표협의체 개최 예정)
- 심의안건 : 7건

② 실무협의체

- 실무협의체위원 : 18명
- 회의개최 : 14회
- 심의안건 : 35건

③ 실무분과

- 실무분과위원 : 55명
- 실무분과 : 6개 분과
(영유아·아동·청소년분과, 노인분과, 여성분과, 장애인분과, 사례관리분과, 통합서비스분과)
- 회의개최 : 22회

④ 기타회의운영

- 분과기획사업 심사회의 : 2회
-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T/F회의 : 5회
-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사진공모전 심사회의 : 1회

2.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 인력풀구성

○ 사업목적

-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 선임 할 수 있음.
- 법인의 주 사무소가 동해시인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후보자 심사 및 추천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

○ 사업내용

- 수요조사 : 동해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추천인원 및 예상시기 조사
- 이사 후보자 모집 : 이사회모집 공고게재 및 접수 타 기관 추천 요청

- 심사 : 법정 결격사유 확인 및 운영위원회의 개최
- 인력풀 구성

○ 사업실적

- 사업기간 : 2015년 연중
- 외부추천이사 요청 기관
 - 사회복지법인 열린어린이집 : 1명 추천-> 1명 (현재 진행 중)
- 소요예산 : 비예산

3. 분과기획사업

○ 사업목적

- 실무분과 중점 추진사업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 제시
- 분야별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활발한 논의구조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 의제
- 개발 및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안 모색

○ 사업목표

- 각 분과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 분과의 협력 강화
-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, 상호협력체계 강화

○ 사업실적

- 사업기간 : 2015년 5월~12월 (각 실무분과 사업제안서 심의 후 선정)
- 선정분과
 - 장애인분과 - 동해시 ‘장애인 어울두리 걷기’ (1,960천원)
 - 영유아아동청소년분과 - 매직쇼 & 어린이독서인형극 ‘꿈지와 왕콧구멍’ (1,996천원)
 - 노인분과 - 독거노인 화재예방 사랑 잇기&가두 캠페인 (1,998천원)
- 소요예산 : 5,954천원

4. 분과연합사업 - 제2회 동해시 사회복지 어울림한마당

○ 사업목적

시민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보제공과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 제공

○ 사업목표

- 민·관 사회복지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 와 연대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

- 동해시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·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
-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복지서비스 체감도와 질 향상 도모

○ 사업실적

- 사업기간 : 2015년 10월 31일
- 사업대상 : 1,000여명 / 동해시민, 동해시 관내 협의회 소속 사회복지 관련 시설·기관·단체
- 사업내용
 - 6개 분과 및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체험, 홍보, 먹거리, 사진전시, 놀이마당 부스 운영
 - 참여 기관 동아리 발표회
- 사업장소 : 북평 전천강 야외공연장 일대
- 소요예산 : 22,800천원

5. 교육사업-민관합동교육(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실무시책교육)

○ 사업목적

- 동해시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먼저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,
- 지역사회 민·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.

○ 사업내용

- 강의 :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패러다임과 실천 전략 (2h)
- 교육 : 동해시 사회복지 실무시책 (복지과, 가족과, 보건소 소관 업무)

○ 사업실적

- 사업기간 : 2015년 04월 10일(금) 15시~18시
- 사업대상 : 실과소동 : 6급 이상 (필수), 7급 이하 (교육희망자) 150여명,
관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150여명
- 사업장소 :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
- 소요예산 : 833천원

6. 교육사업-제2회 강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

○ 사업목적

- 선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
- 구체적인 활동방법들을 적용가능 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토론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비전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함.

○ 사업내용

- 선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및 주제발표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사례
(활성화 위한 노력, 민관협력 방안)
-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토론

○ 사업실적

- 사업기간 : 2015년 08월 27일~28일
- 사업대상 : 강원도 협의체 위원 및 관련 공무원 (관련 실무자)
- 사업장소 : 현진관광호텔 4층
- 사업예산 : 3,000천원

7. 전국대회 및 선진지견학

○ 사업목적

-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환경 변화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유·확산
- 전국협의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선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대표,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의 참여 확대 및 적극적인 위원 활동의 동기부여 기회 제공으로 보장협의체에 대한 인식
- 대표,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간, 민과 관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기회 마련

○ 사업실적

- 사업기간 : 2015년 10월 22일~24일
- 사업대상 : 대표·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(4명), 실무협의체 위원(1명),
실무분과장(1명), 실무분과 위원(1명), 관련 공무원(2명), 상근간사(1명)
- 사업장소 : 제주 그랜드호텔 연회장 및 제주문화탐방
- 사업예산 : 4,614천원

8. 기타 홍보사업

-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, 관리
 - 협의체 운영 전반 (회의, 행사 일정, 자료)게시
- 동해시 해오름 천사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

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년도 운영계획(안) 논의

I

운영개요

1. 법적근거

○ 사회복지급여법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,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 ~ 이하 생략 ~

③ ~ 이하 생략 ~

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
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사회복지급여법 시행규칙 제6~7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제6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,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 ~이하 생략~

제7조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. ~ 이하 생략 ~

○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

2. 운영목적

-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 복지계획수립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 참여복지 구현
-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 기반 마련으로 수요자의 복합적 욕 구에 공동대응하고, 주민들이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-stop, One-stop으로 제공
-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
-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 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

3. 운영목표

-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심의, 평가 및 건의
-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수립, 모형개발 및 건의
- 지역사회 보건·복지 연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활성화
-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·관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
-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 특화모델 등 제시

4. 운영기간

⇒ 2016. 1. 1. ~ 2016. 12. 31.

5. 운영내용

가. 회의 운영

- 지역사회복지전반에 대한 협의, 심의, 건의
-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별로 회의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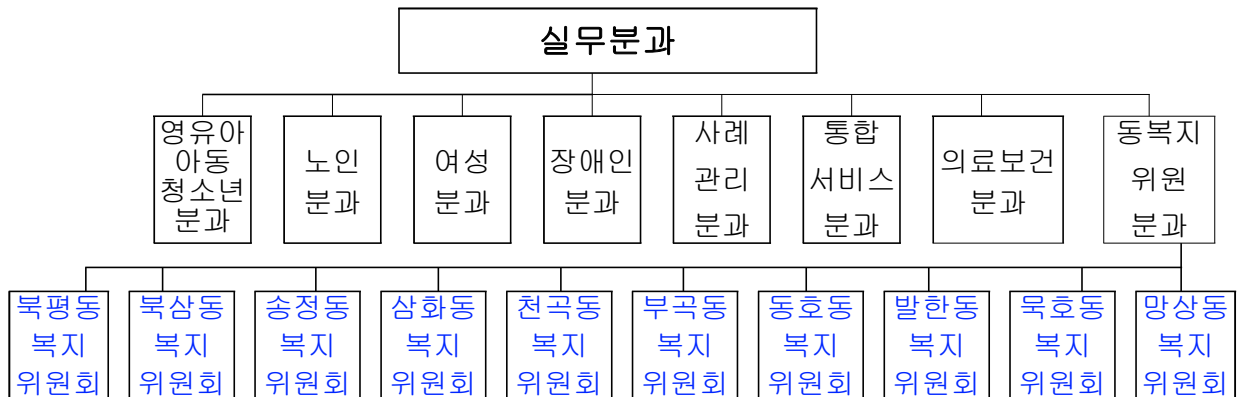
나.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 심의

- 2016년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및 2017년 계획 수립 및 심의

- 위원구성
 - 당연직 : 3명(복지담당, 경로복지담당, 보건담당)
 - 위촉직 : 15명
- 추가위원구성 : 동복지위원분과장

다. 실무분과

- 각 분과별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추대
- 추가분과구성
 - 분과명 : 동복지위원분과
 - 위원구성 : 각 동복지위원회장 10명
 - 동복지위원분과 아래 각 동복지위원회 구성 (10개동, 5~6명 내외)



라. 상근간사 : 1명

1. 분야별 운영계획

가. 회의운영

- 대표협의체 회의
 - 회의 개최 : 분기별 1회 (연 4회)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2016. 2월	○ 2015년 협의체 결산보고 ○ 2015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 및 심의
2016. 5월	○ 분과기획사업 추진상황 보고 ○ 사회보장 심의
2016. 9월	○ 2016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○ 제3회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상황 보고 ○ 사회보장 심의
2016. 12월	○ 2017년 협의체 예산 및 운영계획(안) ○ 사회보장 심의

- 실무협의체 회의
 - 회의 개최 : 연 6회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2016. 2월	○ 2015년 협의체 결산보고 ○ 동복지위원회 및 지역자원연계 T/F 구성 ○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식
2016. 4월	○ 분과기획사업 계획(안) ○ 민관합동 워크숍 계획 보고
2016. 6월	○ 민관합동 워크숍 결과 보고 ○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계획(안) ○ 2016년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 계획(안)
2016. 8월	○ 2016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중간평가 ○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상황 보고
2016. 10월	○ 제3회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추진결과 보고 ○ 2017년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(안)
2016. 12월	○ 2017년 협의체 예산 및 운영계획 논의

- 실무분과 회의
 - 회의 개최 : 연 6회
 - 회의 내용

예정일	주요안건
수시 (홀수 달, 각 분과별 6회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분과별 협의체 사업 논의 ○ 각 분과별 연차별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논의 ○ 분과기획사업 논의 ○ 각 분과별 사회복지어울림한마당 세부계획 논의 ○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방안 논의 등

나.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

- 각 분과별 연차별 계획 모니터링
 - ⇒ 실무협의체에서 분석·평가·검토
 - ⇒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확정

다. 협의체 활성화 사업

- 민·관 합동 워크숍
 - 일 정 : 2016년 5월경, 11월경
 - 횟 수 : 2회
 - 대 상 : 협의체 위원
 - 내 용 : 협의체 활성화 및 복지역량강화

- 분과기획사업
 - 계획구상 및 공모 : 2016. 1월~5월
 -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: 6월
 - 사업시행 : 6월 이후
 - 내 용 : 다각적인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분과특성에 맞는 기획사업

○ 제3회 동해시사회복지 어울림 한마당

- 일 정 : 2016.09월경
- 대 상 : 동해시관 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, 관련공무원, 동해시민
- 내 용 :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상담, 체험부스 운영, 바자회, 지역복지문제 관련 포럼

○ 강원도 워크숍 및 전국대회 참가

- 일 정 : 2016.06월, 10월경
- 대 상 : 협의체 대표위원장, 실무위원장, 분과위원, 담당공무원, 간사
- 내 용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네트워크 강화 및 비전 공유

○ 협의체 우수위원 선진지 견학

- 일 정 : 2016.10월경
- 대 상 : 협의체 우수위원
- 내 용 :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참여 동기부여 및 타 시·군 벤치마킹 및 연수

○ 지역자원연계사업

- 일 정 : 2016년(연중)
- 횟 수 : 수시
- 대 상 : 지역자원연계 T/F, 동복지위원회
- 내 용 : 공공과 민간 복지 간 자원 연계·협력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및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을 도모

라. 외부추천이사 운영위원회

- 외부추천이사후보자 연중수시 모집을 통해 추천 가능한 인력풀 구성

마. 홍보사업

-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현황안내